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4월 20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4월 21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4월 29일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설 동 주

나. 제안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추진협의회 설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11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학 곤

○ 본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산업단지재생추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 위원장의 선출, 간사의 임명,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